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“제35조”를 “제33조”로 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7,154명”을 “6,796명”으로 하고, 동조 제2호 중 “7,136명”을 “6,778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의 총수를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해소 시까지 그 초과하는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## 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조(명칭)</b>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및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b>제1조(명칭)</b> .....                      .....제33조 .....                      .....                      .....                      .....                      .....</p>
<p><b>제2조(정원의 총수)</b>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하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7,154명</u>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18명                      2. 본청·지역교육청·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: <u>7,136명</u></p>	<p><b>제2조(정원의 총수)</b>.....                      .....                      ..... <u>6,796명</u>.....                      .....                      1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2.....                      ..... <u>6,778명</u></p>
<p>부칙</p>	<p>부칙</p>
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	<p><b>제1조(시행일)</b>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2조(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)</b>                     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의 총수를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해소 시 까지 그 초과하는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</p>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